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대재해 발생 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21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중대재해 발생 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8.

다. 회 부 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중대재해 발생 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의2·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 ----- -----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u><신설></u>	2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함)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를 통칭하는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함)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하거나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²⁾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의2·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2의2. (생략)

3. ~ 7. (생략)

8.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³⁾,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경우

9. ~ 19. (생략)

② ~ ④ (생략)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중대재해에 해당함)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을 하면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통해 수리 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법률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